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470호

「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(국토교통부 고시)」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1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늘어나는 항공주파수 수요 및 간섭에 대비하고 주파수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라 고시된 「항공주파수 운용계획」의 제명을 「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으로 변경하고, 주파수 신설 및 변경 신청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항공주파수 이용협의 시 중복 검토 및 모호한 신청절차를 개선

- 관할 지방항공청장 및 교통본부장이 항공주파수에 대한 국내 영향성 등을 검토 및 승인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협의 및 간섭 검토를 시행하는 등 업무 명확화

나. 국제규정 개정 시 효율적 반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세부 주파수 이용
규칙은 [별표]로 신설

다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법령 위임 행
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만료일(21.06.30) 도래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

3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1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
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>정책자료>법
령정보>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개 정 안	수 정 안	의 견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
항행위성정책과((우)30103)
- 전자우편 : yong404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637(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)

4. 그 밖의 사항

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(전화 (044) 201 -
4364, 팩스 044-201-563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